

January 14, 2014

2014년 개정세법 – 개인과세 관련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4).

구 분	개 정 사 항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25% :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이하) -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출생·입양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초과 1명당 20만원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2.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종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개정 소득세법 제55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60%)를 폐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종전의 50%에서 40%의 세율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종전의 40%에서 기본세율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60% 양도소득세율 적용)를 완화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15년 이후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완화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기업분할·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 해소 등의 취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3).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과세요건 완화 <table><tr><th>구분</th><th>정상거래비율</th><th>한계보유비율</th></tr><tr><td>일반법인</td><td>30%</td><td>3%</td></tr></table>	구분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 중소, 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완화 <table><tr><th>구분</th><th>정상거래비율</th><th>한계보유비율</th></tr><tr><td>일반법인</td><td>30%</td><td>3%</td></tr><tr><td>중소,중견법인</td><td>50%</td><td>10%</td></tr></table> ※ 중견법인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구분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중소,중견법인	50%	10%
구분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구분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중소,중견법인	50%	10%														
■ 증여이익 계산방법 시 초과거래비율 초과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1/2	■ 초과거래비율 차등적용 - 일반법인 : 1/2 적용 - 중소·중견법인 : 1/2 적용 배제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전액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
■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	•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중소·중견법인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초과거래비율을 중소·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 개정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기업분할·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 해소를 위해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 및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동 개정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동 개정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1994년 이후 미조정되어 공제수준의 현실화 문제가 있던 증여재산 공제금액 일부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제53조).

종 전				개 정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3천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종전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개정하였으며(개정 소득세법 제97조의2),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피상속인 재산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상속세 추정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제18조 제8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재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종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제율은 종전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종전 최대 3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업의 범위를 종전 세세분류 기준에서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제1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동 개정규정은,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 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요건 완화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8.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 및 증여 과세강화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등 변칙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유증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 지분율만큼 상속인이 납부토록 하고,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되, 상속인 지분율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부분은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또한,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고자 특정법인과 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의 범

위에 거래대상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개정 상증 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됩니다.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개정 소득세법 및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세원투 명성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종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개정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10.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탈세 제보를 통한 지 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조 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65 | E-Mail. i shwang@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